

API의 저작물성과 공정이용 법리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Oracle v. Google 판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지난 2018. 3. 27. Oracle America, Inc.("Oracle")가 Google LLC("Google")를 상대로 제기한 Java API 패키지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Google의 공정이용(fair use) 항변을 배척하고 Google에게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법적 쟁점이 다루어졌고, 2010년에 첫 소송이 제기된 뒤로 거의 매 심급마다 판단이 엇갈렸을 정도로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이어졌기 때문에, 과연CAFC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소프트웨어 업계와 학계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에 관한 CAFC의 판단 및 그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Java는 Sun Microsystems, Inc.("Sun")가 1990년대에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Sun은 프로그래머들이 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손쉽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입출력, 수학연산, 보안, 텍스트 처리 등의 기능을 미리 구현하여 이를 Java 2 Standard Edition("Java SE")이라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Java SE는 2008년을 기준으로 약 3,000개의 클래스(class)와 30,000개의 메소드(method)를 포함하는 166개의 API 패키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무렵 Google은 모바일 기기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Android를 출시하였습니다. Google은 Java 프로그래밍 언어와 Sun이 제공해온 개발환경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Android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Sun 으로부터 Java API에 관한 라이선스를 획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Sun과의 협상에 실패했고, Google은 Android API를 직접 개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Android API는 각 클래스와 메소드를 Sun의 Java API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므로 소스코드상의 공통점은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Google은 Android API에 37개의 Java API 패키지의 각 클래스와 메소드의 형식을 차용했고, 그 결과 Android API에는 Sun의 Java API의 해당 37개 패키지와 그 안에 포함된 클래스 및 메소드들의 선언코드¹ 약 11,500줄이 동일하게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2010년에 Sun을 인수한 Oracle은 같은 해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Northern District of

1. '선언코드(declaring code)'란 객체를 정의하는 단위인 클래스의 이름과 타입, 기능 수행 단위인 메소드의 이름과 그 입력 변수의 이름 및 타입을 정의한 코드를 의미합니다.

California; NDCA)에 Java API 패키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Google을 제소하였습니다.²

2. 소송의 진행경과 및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은 ① 프로그램의 실행을 담당하는 코드(implementing code)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구조와 이름을 정의한 선언코드 및 API를 구성하는 패키지, 클래스, 메소드 등의 구조, 배열, 조직(Structure, Sequence, Organization; SSO)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② 만약 API의 선언코드와 SSO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Google이 Java API 패키지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 법리'에 따라 정당화되는지 여부입니다.

1차 1심: 이 사건을 최초로 심리한 NDCA는 사건을 배심재판으로 진행했는데, 배심원단은 rangeCheck 함수에 포함된 9줄 등의 동일성과 Java API의 SSO를 모방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NDCA는 합체의 원칙과 짧은 어구 이론(merger and short phrase doctrine) 등을 근거로 복제된 선언코드와 SSO에 대하여 저작물성(copyrightability)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Oracle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³

1차 항소심: 그러나 Oracle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에서 CAFC는 Java API에 포함된 선언코드와 SSO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SSO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비문언적 요소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에 해당할 수 있고, Google은 원하기만 하였다면 Android API 패키지를 달리 구성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저작물성을 인정했습니다. 선언코드에 대해서는 합체의 원칙, 필수적 장면 이론, 짧은 어구 이론을 모두 검토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작 당시를 기준으로 선언코드에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물로서의 보호 가능성을 긍정했습니다. 이처럼 1차 항소심 판결은 1차 1심 판결과 달리 Java API의 선언코드와 SSO의 저작물성을 인정했으나, 공정이용에 의한 면책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심리를 요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1심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⁴

연방대법원: Google은 저작물성에 관한 항소심의 판단에 대하여 재고를 요구하는 상고허가신청(petition for certiorari)을 제출했으나, 연방대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NDCA로 환송되었습니다.⁵

2차 1심: NDCA는 CAFC의 1차 항소심 판결 취지에 따라 Java API의 선언코드와 SSO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배심재판을 통해 Google의 공정이용 항변에 대하여 판단했습니다. 배심원단은 공정이용의 4가지 요건 모두에 대하여 Google에 유리하게 판단하여 Google의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법원도 이러한

2. Oracle은 당초 특허권의 침해도 주장했으나, 이후 저작권 침해 여부만 쟁점이 되었으므로 특허권 침해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3. Oracle Am., Inc. v. Google Inc., 872 F. Supp. 2d 974 (N.D. Cal. 2012).

4. Oracle Am., Inc. v. Google Inc., 750 F.3d 1339 (Fed. Cir. 2014).

5. Google Inc. v. Oracle Am., Inc., 135 S.Ct. 2887 (2015) (Mem.).

평결을 지지하여 Google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⁶

2차 항소심: 2017. 2. Oracle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CAFC는 Google의 공정이용 항변을 배척하고 Oracle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다시금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⁷

3. 공정이용 법리에 관한 CAFC의 판단

2차 항소심은 Oracle의 항소와 Google의 교차항소(cross-appeal)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어 여러 부수적인 쟁점들이 함께 심리되었지만, 가장 주된 쟁점은 Google이 37개 Java API 패키지의 선언코드와 SSO를 복제한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CAFC는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인 17 U.S.C. §107의 (1) 내지 (4)에 규정된 각 고려요소의 측면에서 Google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제1요소(이용의 목적과 성격): CAFC는 이용의 상업성과 변형성의 측면에서 Google의 행위를 분석했습니다.

(1) 먼저 상업성에 관해서는 Google이 Android를 오픈소스로 개방한 점에서 일부 비상업적 동기를 가졌다는 점과 Android 제공에 대하여 직접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에서 수익을 얻는다는 점은 상업적 이용이라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업성에 관한 결론은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 하지만 변형적 이용에 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Google이 모바일 스마트폰을 위해 166개의 패키지 중 37개를 선택하고 모바일 환경에 맞게 실행코드를 다시 작성했으며 많은 새로운 패키지들이 추가된 점 등을 근거로 변형적 이용을 긍정했습니다. 그러나 CAFC는 Java API 패키지로부터 복제된 선언코드와 SSO는 Android에서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므로 그 이용에 의하여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메시지가 형성되지 않는 점, Android 이전에 Java SE API가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Android에서 37개 패키지를 선택하여 이용한 것을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맥락에서의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형적 이용이라는 Google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제2요소(저작물의 성격): 사실적 혹은 정보적 성격의 저작물은 순수 창작 저작물에 비해 창작적 표현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도가 축소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CAFC는 37개 Java API 패키지의 선언코드와 SSO의 기능적 성격을 인정하여 ‘저작물의 성격’이라는 요소는 공정이용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본 요소 하나만으로 공정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법의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 의회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본 요소는 전체적인 평가에서 비교적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요소(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본 요소와 관련하여 1심은 Google이 37개 API 패키지 전체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호환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인 선언코드와 SSO만을 복제하였고 실행코드는 전혀 복제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의 복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는 Google이 복제한 선언코드의 양이 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양(170줄) 크게 초과하며, SSO의 경우 37개 API 패키지로부터 전체적으로 복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용의

6. Oracle Am., Inc. v. Google Inc., No. C 10-03561, 2016 WL 3181206 (N.D. Cal. June 8, 2016).

7. Oracle Am., Inc. v. Google LLC, No. 2017-1118 (Fed. Cir., 2018).

양이 미미하다고 보더라도, Google이 Java API 패키지의 선언코드와 SSO를 복제한 동기가 Java 개발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복제된 37개 API 패키지의 선언코드와 SSO는 적어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CAFC는 본 제3요소가 공정이용 인정에 있어 중립적으로 작용하거나 부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4요소(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CAFC는 본 제4요소에 관해 1심과 가장 극적으로 판단을 달리 했습니다. 1심은 Java API 패키지가 데스크탑 및 랩탑 컴퓨터를 위한 것이므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하는 Android에서의 이용이 원본 저작물의 시장에 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Java SE가 Android 출시 전 수년간 초기 스마트폰과 모바일기기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Google의 이용은 원본 저작물의 시장에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해가 되었을 수 있고 최소한 Oracle이 Java API 패키지와 그 파생저작물을 통해 진출할 수 있었던 잠재적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개별 요소에 대한 검토에 이어, CAFC는 ‘Google이 고유의 API를 개발하거나 Oracle로부터 API를 라이선스 받음으로써 창작적 표현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racle의 창작적 노력의 결과를 복제했고, 이처럼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경쟁 플랫폼에서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공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한 뒤, 제2요소가 공정이용을 지지하고 제3요소는 중립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제1 및 제4요소에 대한 평가가 공정이용을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크게 기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Google의 행위를 법적인 측면에서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본 판결의 의미 및 향후 전망

CAFC가 Oracle의 Java API 패키지 복제에 관한 Google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긍정함에 따라, 사건은 Google의 손해배상 범위의 추가 심리를 위해 다시 1심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Google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연방대법원은 과거 1차 항소심 판결에 대한 Google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 이번에 Google이 다시 상고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계와 학계에서 CAFC의 이번 2차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비판하는 견해들이 속속 표명되고 있고 이번 판결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상당히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2차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에서의 결론이 컴퓨터 코드의 복제에 관해서는 언제나 공정이용 항변이 성립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CAFC도 본 판결이 미칠 파장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비단 손해배상액의 규모에서만 아니라, 판결의 결론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계의 관행에 초래될 수 있는 변화의 크기 측면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 관계자들과 미국 연방정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만약 Google이 상고할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심리할 것인지 및 그 경우 CAFC의 공정이용 판단이 유지될 것인지는 매우 큰 관심사입니다.

한편 이번 2차 항소심 판결은 17 U.S.C. §107와 매우 흡사한 체계와 내용을 갖는 우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조항의

해석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AFC가 4가지 요소를 검토하면서 제시하는 미국의 선례들은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는 데에도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으며,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에 있어 공정이용의 판단, 특히 각 호의 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사건의 향후 추이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판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의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임상혁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TEL. 02 316 4055

E-Mail. shim@shinkim.com

류시원 변호사

TEL. 02 316 1622

E-Mail. swryu@shinkim.com

신다운 외국변호사(미국)

TEL. 02 316 1749

E-Mail. dyshin@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의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